

#### **KPMG Tax**

# **Korean Tax Update**

February 2021, Issue 80

# [조세뉴스]

#### 2020 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전문보기]

정부는 '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등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21.3월 중순)할 예정임. 주요 개정내용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대상인 신성장기술 범위 확대,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관련 세부사항 규정 등이 포함됨.

##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기재위 의결 (기획재정부) [전문보기]

'21.2.19.(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년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1년 유예등이 포함됨.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청 사전심사 전담팀 신설 (국세청) [전문보기]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Hometax),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가능함.



# [판례]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 두 47045 판결

•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은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출채권 중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비록 변경회생계획에 의하여 위 주식이 무상소각되었지만 원래의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에 불과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3항, 제246조에 의하면, 회생계획변경은 이를 인가하는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생긴다), 이 사건 각 매출처가 위 주식을 취득한 이후 무상소각 전까지 약 1년 5개월간 위주식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출채권 중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을 '회생계획인가의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또한 이 사건 각 매출채권 중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고, 그후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발생된 신주를 무상소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각 매출채권 중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발생된 신주를 무상소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각 매출채권 중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발생된 신주를 무상소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매출채권 중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발생된 신주를 무상소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매출채권 중 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이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에 대하여 사기, 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법인 소득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사용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범죄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법인에게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 두 38959 판결(일부 파기환송)

•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되었을지라도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때에는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연장해주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는 바, 납세자 본인에 대한 해당 국세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됨.

# [심판례]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각)

#### 조심 2019 서 0322, 2020. 12. 14.

• 이 사건 이자수익과 관련된 사업인 자회사 등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경영관리업무와 같은 비과세사업이고, 2013.2.15.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1조 제1항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시 면세사업에 "비과세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자회사 등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이 사건 이자수익의 경우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인 자회사 등 지원업무의 대가로서 그 일체가 비과세사업의 대가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이 사건 이자수익을 비과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또한,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지배 또는경영관리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인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등 비과세사업이 주요 목적사업을 이루고 있는 바, 자회사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문수수료가 위 과세사업에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그 매입세액을 전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청구법인이 쟁점옵션계약에 따라 주식 취득 시 지출한 옵션프리미엄이 주식의 취득 가액인지 아니면 당기 비용인지 여부 (취소)

#### 조심 2019 서 2259, 2021. 1. 5.

• 쟁점풋옵션약정은 행사가격이 당초 쟁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고 일정한 만기가 있으며 그 만기에 일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거래대상인 주식의 가치변동이나 개발사업의 성패, 실현된 사업수익의 규모 등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출자금을 납입하고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약정한 수익률을 얻는 내용으로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풋옵션을 취득한 자들이 모두 만기에 약정한 내용대로 풋옵션을 행사하여 출자원금과 일정한 수익률을 얻고 거래가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거래는 외관상으로는 주식의 거래로 보이지만 건설출자자들이 특수목적법인인 쟁점법인의 출자금을 매개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또한, 옵션프리미엄은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한 자산 취득의 부대비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전사용의 대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주식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19서2139).

#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의 취득(50% 감면)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75%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조심 2019 지 2323, 2021. 1. 28.

• 청구법인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인 건축공사에 착공할 당시 시행 중이던 이 건 종전규정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7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 기간을 2013.12.31.까지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점, 실제로 이러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목적으로 그 부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2011.12.31.까지 취득세 등을 전부 면제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할 당시에는 2013.12.31.까지 취득세 등을 75% 감면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가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당시에는 2016.12.31.까지 취득세 등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그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종전규정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의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조심 2020 지 3329, 2021. 1. 29.

•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하거나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0다84243)인 바, 청구법인이비록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설립승인을 받았으나 수탁법인인 A회사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변경)을 받은 후 착공하여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법인이 사업시행자이고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설계팀 소속 임직원의 쟁점인건비가 조특법 제 10 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 (취소)

#### 조심 2019 중 3785, 2021. 2. 1.

•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서 기업부설연구소 근무직원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또는 보조하는 근무자의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구개발활동이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그 개발과정에는 고객사에 납품할 시제품의 설계·제작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구노트 및 개발완료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 중에는 고객사로부터 소재의 개발 등 연구팀의 소관인 것과 더불어 그 개발된 소재의 부품이 적용된 구조의 설계 등 설계팀의 소관인 수주를받아 이를 연구팀과 설계팀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을 감안하면 연구팀만이 연구개발활동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구조 등 설계기술과 관련한특히 및 신기술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이견이 없어 보이는 반면에 해당 특허등이 연구개발활동과 무관하다는 반증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설계팀이 고객사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 시제품의 설계를 위하여 연구팀의 보유한 것과 구별되는 구조 등 설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소속 임직원에게 지출한 쟁점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함.

# [예규]

원자력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예비부품으로서 해당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경우 해당 예비부품을 취득시점부터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40, 2020. 12. 14.

•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 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 는 예비부품은 취득 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서면-2020-법인-1569, 2020. 12. 24.

•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부 회계감사 시 해당 내국법인이 당초 신고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소



급하여 변경 고시한 경우에는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직전 3 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 2021. 1. 11.

•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 1600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8 조의 2 의 과세특례 적용에 따라 지주회사가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이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 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8.11. 대통령령 제 2744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5 조의 3 제 6 항 후단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재고자산을 위탁 받아 보관 및 관리하는 창고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고자산의 부존재가 확정된 경우,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 산입방법 및 귀속시기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0, 2021. 1. 15.

• 내국법인이 창고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수량 차이의 원인을 알 수 없어 수량차이의 금액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하였으나, 그 수량차이가 창고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계약내용에 따라 창고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 19조의 2제 1항 제 8호에 따른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제 3항 제 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창고업체의 정황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다음해 다시 증가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u>서면-2020-법인-5510, 2021. 1. 18.</u>

• 「조세특례제한법」제 29 조의 7 제 1 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매 과세기간별로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제 29 조의 7 제 1 항을 적용받던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제 2 항에 의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제 29 조의 7 제 1 항에 따라 별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임.



# 외국법인이 저가로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그 차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773, 2021. 1. 25.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A 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B 가 완전모자회사 관계인 경우로서, B(완전자회사)가 A(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을 부 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 2021. 2. 4.

•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 55 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조세특례제한법」제 31 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 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 에 가산함.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